

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



과 천 시 의 회

목 차

1. 운 영 기 간	2
2. 심 사 대 상 기 관	2
3. 특 별 위 원 회 구 성	2
4. 심 사 일 정 및 장 소	3
5. 관 계 공 무 원 출 석 현 황	4
6. 심 사 결 과	5

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

1. 운영기간

- 기 간 : 2018년 9월 10일 ~ 9월 12일(3일간)

2. 심사 대상기관

- 시 본청 18개 담당관·과, 보건소, 3개 사업소, 6개동, 시설관리공단

3. 특별위원회 구성

- 위 원 장 : 박 종 락 의원
- 간 사 : 고 금 란 의원
- 위 원 : 김현석 의원, 류중우 의원, 박상진 의원, 제갈임주 의원
- 사무보조직원

전	문	위	원	심	명	순
전	문	위	원	김	정	운
지	방	행	정	7	급	박
속		기	사	이	해	영

4. 심사일정 및 장소

일 시	대 상 부 서	장 소	비 고
2018. 9. 10. (월) (10 : 00)	< 운 영 계 획 서 채 택 > 세 무 과 기 획 감 사 담 당 관 총 무 과 복 지 정 책 과 사 회 복 지 과 열 린 민 원 과 교 육 청 소 년 과 정 보 통 신 과 문 화 체 육 과	의회 3층 특 위 장	제1차 특위
2018. 9. 11. (화) (09 : 30)	회 계 과 안 전 총 괄 과 도 시 정 책 과 건 설 과 건 축 과 교 통 과 산 업 경 제 과 환 경 위 생 과	〃	제2차 특위
2018. 9. 12. (수) (09 : 30)	6 개 동 주 민 센 터 보 건 소 정 보 과 학 도 서 관 맑 은 물 사 업 소 환 경 사 업 소 시 설 관 리 공 단 의 회 사 무 과 < 계 수 조 정 및 의 결 > < 결 과 보 고 서 채 택 >		제3차 특위

5. 관계공무원 출석현황

일 시	출석공무원	장 소	비 고
2018. 9. 10. (월) (10 : 00)	< 운영 계획 서 채택 > 부 시 장 행정 복지 국 장 세 무 과 장 기획 감사 담당 관 총 무 과 장 복지 정책 과 장 사회 복지 과 장 열 린 민 원 과 장 교육 청 소 년 과 장 정보 통신 과 장 문화 체육 과 장	의회 3층 특 위 장	제1차 특위
2018. 9. 11. (화) (09 : 30)	부 시 장 행정 복지 국 장 안전 도시 경제 국 장 회 계 과 장 안전 총 괄 과 장 도시 정 책 과 장 건설 설 과 장 건축 과 장 교통 과 장 산업 경제 과 장 환경 위 생 과 장	"	제2차 특위
2018. 9. 12. (수) (09 : 30)	부 시 장 6 개 동 주 민 센 터 동 장 보 건 소 장 정보 과학 도서관 장 맑 은 물 사 업 소 장 환경 사 업 소 장 시설 관리 공 단 이 사 장 의회 사무 과 장 < 계 수 조 정 및 의 결 > < 결 과 보 고 서 채 택 >		제3차 특위

6. 심사결과

연번	의안번호	안 건 명	의결일	결과
1	2018-40	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	2018.9.12	수정 가결
2	2018-41	과천시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	2018.9.12	수정 가결
3	2018-42	과천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	2018.9.12	원안 가결
4	2018-43	과천축제육성기금운용변경계획안	2018.9.12	원안 가결
5	2018-44	재난관리기금운용변경계획안	2018.9.12	원안 가결
6	2018-45	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	2018.9.12	원안 가결
7	2018-39	과천시의회 대형개발사업 이익환수 특별위원회 운영 및 지원 조례안	2018.9.12	원안 가결

과천시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2018 - 41
----------	-----------

제출연월일 : 2018. 9. .

발 의 자 : 예산 및 조례심사특위 위원장

1. 수정이유

정책연구용역의 품질과 활용도를 높이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 기능을 강화하고 심의위원의 제척 및 해촉사항을 추가하여 심의위원회 투명성을 확보함

또한, 정책연구용역과 관련된 예산을 편성하여 의회에 제출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첨부하도록 하는 조항을 추가함

2. 수정내용

제3조제5호를 삭제하고 제6호를 제5호로 한다

제5조제2항 중 “10명 이상 20명”을 “15명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④ 당연직 위원은 행정복지국장, 안전도시경제국장, 기획감사담당관, 회계과장으로 하며,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.

1. 과천시의회의 의원 2명

2. 대학의 부교수 이상, 연구기관의 박사학위를 소지한 연구원,

3. 각 분야 전문가와 각종 용역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
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내용 중 “용역의” 앞에 “정책연구”를 추가 한다.

제6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⑤ 시장은 용역과 관련된 예산안을 편성하여 과천시 의회에 제출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.

제7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,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제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심의에서 제척된다.

1. 본인 또는 본인의 배우자, 4촌 이내의 혈족, 2촌 이내의 인척 또는 그 사람이 속한 기관·단체에서 심의 대상 정책연구용역을 수행할 경우

2.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의 대상과 관련된 단체 또는 연구소 등에 재직한 경우

3. 그 밖에 심의 대상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
제8조제2항 중 “제1항의”를 “제1항 각 호의”로 한다.

제9조부터 제16조를 제10조부터 제17조로 하고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.

제9조(위원의 해촉)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.

1.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

2.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

3. 회의와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 등을 누설하거나 민원을 일으킨 경우

4. 직무태만,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 5.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
 6. 그 밖에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
- 제12조(중전 제11조)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내용 중 “용역” 앞에 “정책연구”를 추가한다.
- 제14조(중전 제13조) 중 “외부”를 “위촉직”으로 한다.
- 제15조(중전 제14조) 및 제16조(중전 제15조) 중 “국가정책연구관리시스템” 다음에 “(PRISM)”을 추가한다.

3. 신 · 구조문 대비표 : 붙임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적용범위) (생 략) 1 ~ 4 (생 략) 5. <u>행사, 시설물 관리 등 정책연구 목적 외 용역</u> 6. (생 략)	제3조(적용범위) (좌 동) 1 ~ 4 (좌 동) 5. <u>(삭 제)</u> 5. (좌 동)
제5조(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) ① (생 략) ② ----- <u>10명 이상 20명 이하</u> ----- ③ <u>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 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,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.</u> 1. <u>당연직은 행정복지국장, 안전도시 경제국장, 기획감사담당관, 회계과장</u> 2. <u>지방행정업무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</u> 3. <u>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람</u>	제5조(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) ① (좌 동) ② ----- <u>15명</u> ----- ----- ③ <u>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 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</u> ④ <u>당연직 위원은 행정복지국장, 안 전도시경제국장, 기획감사담당관, 회 계과장으로 하며, 위촉직 위원은 다 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.</u> 1. <u>과천시의회 의원 2명</u> 2. <u>대학의 부교수 이상, 연구기관의 박사학위를 소지한 연구원,</u> 3. <u>각 분야 전문가와 각종 용역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 부한 사람</u> ⑤ · ⑥ (좌 동)

④·⑤ (생략)

제6조(위원회의 기능) ① (생략)

1. 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, 유사·중복성 검토 등에 관한 사항
2. 용역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
3. 용역결과의 공개 및 활용상황의 점검 등에 관한 사항

②~④ (생략)

<신설>

제7조(위원회의 운영)

① ~ ③(생략)

<신설>

④ (생략)

제8조(위원의 제척·회피) ① 위원회의 위원은 본인 또는 본인의 배우자, 4촌 이내의 혈족, 2촌 이내의 인척 또는 그 사람이 속한 기관·단체와의 정책연구 계약에 관한 사

제6조(위원회의 기능) ① (좌동)

1. 정책연구용역의 필요성과 -----
2. 정책연구용역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
3. 정책연구용역결과의 공개 및 활용상황의 점검 등에 관한 사항

②~④ (좌동)

⑤ 시장은 용역과 관련된 예산안을 편성하여 과천시 의회에 제출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.

제7조(위원회의 운영)

① ~ ③(생략)

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,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⑤ (좌동)

제8조(위원의 제척·회피)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심의에서 제척된다.

1. 본인 또는 본인의 배우자, 4촌 이

항의 심의·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.

② 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-----

<신 설>

내의 혈족, 2촌 이내의 인척 또는 그 사람이 속한 기관·단체에서 심의 대상 정책연구용역을 수행할 경우

2.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의 대상과 관련된 단체 또는 연구소 등에 재직한 경우

3. 그 밖에 심의 대상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
② ----- 제1항 각 호의 -----

제9조(위원의 해촉) 시장은 다음 각

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

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.

1.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

2.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

3. 회의와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 등을 누설하거나 민원을 일으킨 경우

4. 직무태만,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
5.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

제9조(정책연구용역 심의요청서의 제출) (생략)

제10조(정책연구용역의 심의기준) (생략)

제11조(용역실명제)① ~ ②(생략)

③ (생략)

1. 용역 추진계획의 수립
2. 용역 진행상황의 점검 및 용역결과의 평가
3. 용역결과의 공개 및 활용
4. 그 밖에 용역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제12조(용역진행상황의 점검)

① · ② (생략)

제13조(용역결과의 평가) ① 과제담당관은 용역결과를 평가하기 위하여, 위원회 외부위원이나 해당연구과제 분야의 외부전문가 중 1명 을 평가전문위원으로 지정하여야 한다

② ~ ④ (생략)

제14조(정책연구용역 결과 공개)

과제담당관은 용역이 종료된 후에는 용역결과를 「행정 효율과 협업

아니한 경우

6. 그 밖에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

인정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

제10조(정책연구용역 심의요청서의 제출) (좌동)

제11조(정책연구용역이 심의기준) (좌동)

제12조(용역실명제)① ~ ②(좌동)

③ (좌동)

1. 정책연구용역 추진계획의 수립
2. 정책연구용역 진행상황의 점검 및 용역결과의 평가
3. 정책연구용역결과의 공개 및 활용
4. 그 밖에 정책연구용역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제13조(용역진행상황의 점검)

① · ② (좌동)

제14조(용역결과의 평가) ① ---

----- 위촉직 -----

② ~ ④ (좌동)

제15조(정책연구용역 결과 공개)

촉진에 관한 규정」 제54조에 따라
국가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해 공
 개하여야 한다. 다만, 「공공기관의
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 제9조에 따
 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대해서는 공
 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제15조(용역 결과의 활용) 과제담
 당관은 용역 종료일부터 6개월 이
 내에 용역결과 활용상황을 점검하
 여야 하며 용역결과의 활용현황(별지
 제5호서식)을 작성하여 위원회에
 제출하고 그 내용을 국가정책연구
 관리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.

제16조(수당과 여비) (생 략)

국가정책연구관리시스템(PRISM)에

 -----(이하생략)

제16조(용역 결과의 활용) 과제담
 당관은 용역 종료일부터 6개월 이
 내에 용역결과 활용상황을 점검하
 여야 하며 용역결과의 활용현황(별지
 제5호서식)을 작성하여 위원회에
 제출하고 그 내용을 국가정책연구
 관리시스템(PRISM)에 공개하여야
 한다.

제17조(수당과 여비) (좌 동)

※ 기재하지 않은 조항들은 집행부 원안 내용과 동일